



내부 재심

1. 내부 재심이 무엇인가요?

SACAT(남호주 민사 및 행정 재판소)에서 내려진 어떤 결정들은 SACAT 안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SACAT 결정의 재심'(이는 또한 '내부 재심'이라고 명합니다)입니다.

내부 재심 동안에는 본 재판소는 재판소에서 처음에 내린 결정을 검토하고 추가 증거 또는 자료의 제출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본 재판소는 옳은, 선호할 만한 결정에 도달할 것이며, 재심사되고 있는 그 결정을 지지, 변경할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적합한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라면 누구라도 내부 재심을 원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본 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그 결정이 잘못되었고 다른 결정을 더 선호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당사자에게는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시간 제한

내부 재심 신청은 이전 결정이 내려진 때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부 재심 신청이 그 한 달의 기한을 넘겨 제출된 경우 SACAT 은 그것이 공정하고 합당하다고 여겨질 경우라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기한 연장이 당연히 승인되리라고 가정하시면 안됩니다.

4. 비용 및 수수료

SACAT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는 \$545.00 의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정규 기업의 경우 신청 수수료는 \$765.00 입니다. (정규 기업은 소규모 사업체 또는 비영리단체가 아닌 회사를 말합니다)

SACAT 은 상황에 따라 신청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www.sacat.sa.gov.au/bringing-a-case/fees-and-charges

신청서는 관련된 수수료가 지불되거나 재판소에 의해 면제될 때까지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수료가 지불되거나 면제될 때까지는 기한 연장 신청도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서에 '추후 지불' 옵션이 있습니다. 이는 신청이 유예되기 전 수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7-14 일을 제공합니다. 신청이 유예되면 그 사안은 본 재판소에서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5. 이전 결정의 유예 요청

내부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전의 결정을 보류시키거나 그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어떤 날짜, 시간까지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고 요구되거나 특정한 날짜와 시간까지 어떤 금액을 지불해야한다고 요구되었다면, 본 재판소에서 그 유효한 명령을 재심 신청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예 시키지 않는 한 귀하는 여전히 그 요구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 이전 결정을 보류시키는 것(유예)을 요청하려면 신청인은 신청서에 이를 명기하거나 SACAT 에 이전 결정의 유예를 원한다고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예 요청에는 이를 지지해줄 적절한 근거 또는 문서가 요구될 것입니다.



6. 수수료가 일단 지불되거나 면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 수수료가 지불 또는 면제되면 본 재판소는 귀하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심 신청은 심리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컨퍼런스를 하도록 권해지거나 ‘서면 상으로’ (당사자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본 재판소는 급한 사안의 경우 심리 일정을 급하게 잡도록 시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어떤 기한 내에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면 본 재판소는 그 기한 전에 심리 일정을 잡도록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날짜에 가깝게 재심 신청을 제출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자료표는 법적인 조언이 아니며 어떤 개별적인 사안과 관련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조언을 원하시면 독립적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7. 내부 재심의 결정에 불만족할 경우

본 재판소에서 내부 재심에 관한 결정을 일단 내리게 되면 그 결정은 SACAT 내부에서는 더 이상 심사할 수 없습니다.

본 재판소의 내부 재심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으실 경우 남호주 대법원에 항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법원에 **8204 0289** 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